특허권 양도계약서

서울시	성북구	화랑로	14길	5에 주소	를 둔	한국	라학기	[]술연구	·원(이	하 "	과기연	<u>1</u> "이라	한다)
과				에 주	·소를 등	를 <u></u>		_(이하	" ્રો	수인"	이라	한다)는	• "과
기연"	소유의	특허권을	<u>≥</u> " ċ	냥수인" c	이 양수	함에	있어	다음과	같이	계약	을 체결	결한다.	

제 1 조 (양도대상 특허권)

본 계약의 특허권은 다음의 특허를 말한다.

"과기연" 관리번호	발명의 명칭	출원국	출원번호 (출원일)	등록번호 (등록일)

제 2 조 (이전등록)

"과기연"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"과기연"이 지정하는 특허관리업체를 통해 제1조 특허권의 이전등록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며, "과기연"과 "양수인"은 관련 자료의 제공 등 양도에 관하여 적극 협력키로 한다.

제 3 조 (비용의 부담)

- ① 제1조의 양도대상 특허권과 관련하여 이전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및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특허권의 유지비용은 "양수인"이 부담한다.
- ② "양수인"은 본 기술로 "기술"을 실시한 경우 매출 발생년도부터 양도인에게 경상기술료를 지급 하여야 한다. 경상기술료는 "기술"을 사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(용역 포함)와 관련한 매출액을 기 준으로하며, "기술"이 다른 기술과 결합되어 사용된 경우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 "기술"이 사용된 경우 등을 포함한다. 경상기술료는 매출액의 3%(부가세 별도)로 한다.
- ③ 실시권자는 과기연이 관련법에 따라 상용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급 협조하여야 하며, 매년 6월 말까지 과기연이 제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 실시권 자는 손익계산서, 매출액 명세서, 기술료 감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"기술"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과기연은 상기 매출액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실시권자의 회계장부, 기술자료 및 기타 서류 등을 열람하여 매출액을 조사할 수 있으며, 실시권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매출액 조사결과 실시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, 매출액 조사에 따른 비용은 실시권자에에 부담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경상기술료 등의 지급은 매출액 조사 결과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.

제 4 조 (정보의 사용)

① "양수인"은 "과기연"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나 문서,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"과기연"

으로부터 지득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복사물을 광고, 판매촉진, 보도자료,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"양수인"은 제1항의 목적으로 "과기연"의 명칭 혹은 "과기연" 소속 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 등에 이를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5 조 (연구의 제한)

본 계약은 "과기연"이 제3자를 위하여 동종의 연구를 수햇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

제 6 조 (재양도 및 실시권 허락)

"양수자"는 "과기연"의 동의없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 3년 이내에 제1조의 양도대상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. 제3자에게 특허법 상에 정의된 실시를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7 조 (계약의 효력)

-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다.
- ② "양수인"이 제2조의 이전등록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, 본 계약은 자등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.
- ③ 본 계약은 "과기연"과 "양수인"간 특허권 양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"과기연"과 "양수인"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.

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·날인하고, "과기연"과 "양수인"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21년 월 일

첨부 : 1. 법인인감증명서 1부

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. 사용인감계 1부(필요시)

"과기연" "양수인"

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

한국과학기술연구원

원 장 윤 석 진 (인) 대표이사 (인)